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, 시설사용요금 내용을 삭제하여 시설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자구 수정(국민학교→초등학교, 방위병→공익근무요원)
-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(휴양림 내의 숲속의 집 또는 임간 수련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)
- 시설사용요금표 개정

첨 부

-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중 “국민학교”를 “초등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호중 “방위병”을 “공익근무요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휴양림내의 숲속의 집 또는 임간수련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.

제9조중 “충청북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세입”을 “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”으로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2>

시 설 사 용 요 금 표

(단위:원)

시설명	구 분	사용기간	요 금	비 고
숲속의 집	· 4인용	1동/1일	30,000	
	· 5인~8인용		40,000	
캠 프		1회사용	20,000	앰프시설 포함
화이어장 오토캠프장		개소/1일	4,000	주차 및 야영 7~8 인용 텐트1조
야 영 장		개소/1일	2,000	야영 7~8인용 텐트 1조
평 상	· 소 형 (2평 미만)	개소/1일	1,000	
	· 대 형 (2평 이상)	개소/1일	2,000	
사 계 절 썰 매 장	· 어린이		3,000	썰매 대여포함
	· 청소년·군 인·일반		4,000	
			5,000	
단체숙소 샤 워 장		1동/1일	100,000	※징수방법은 자진납부 함을 설치하여 납부
	· 어 른	1회사용	500	
	· 학 생		300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어린이 :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(국민학교 학생)를 말한다.</p> <p>2. 청소년 및 군인 : 13세이상 20세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(전투의무경찰 <u>방위병</u>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3 - 6 (생략)</p> <p>제7조(입장료등의 면제)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 - 9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9조 도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<u>충청북도공유임야관리를 특별회계세입</u>으로 하며, 시·군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시·군 세입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.....</p> <p>.....</p> <p>1.<u>초등학교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2.<u>공익근무요원</u>.....</p> <p>3 - 6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입장료등의 면제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 - 9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휴양림내의 숲속의 집 또는 임간수련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</u></p> <p>제9조</p> <p>.....<u>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